

부천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12. 6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12. 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99. 12. 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과장 권병준)

가. 제안이유

- 관내 오정구 삼정동 37-3번지상에 현재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있으나 한걸음 더 나아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건설폐재류를 파쇄기로 처리하여 폐자재를 재활용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지난 99. 4. 15일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의회 의견을 들어 99. 6. 2~6. 17(14일 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람공고하여 99. 6. 23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 주위에 분진 등의 공해피해가 우려되므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부결된 바 있으나 99. 8. 9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요건 중 소각로(100kg/hr 이상)설치규정이 삭제 되어 소각로시설에 대하여는 위탁처리하며, 부지주변에는 담장을 높이 10m로 설치하고 폐기물 보관장소 내에 1일 150톤 기준의 스프링클러 설치와 진·출입로에는 고압대형 자동세륜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장 주변도로 500m 이내는 살수차량을 1일 5회 이상 운행하고 파쇄시설에는 방음막 및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공해 및 분진발생을 예방하는 대책을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이 있어
- 급회 건설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국토훼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절감과 자원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시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듣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7-3번지상에 (주)힘찬환경 대표 임태방으로부터 99. 4. 15일 의견청취시 시설면적 9,748㎡(약 2,948평) 중 도로(중3류38호선 : 공판장 진입로)에 편입되는 부지면적 약 88

m'(약 26평)를 제외한 9,660m'(2,922평)부지에 대해 건설폐재류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신청이 있어

- 금회 동부지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 중간처리)로 결정, 설치하여 관내 지역을 비롯 경기도 일원에서 수집된 각종 건설폐기물을 파쇄기로 분쇄하여 골재대용품을 생산,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다. 관련근거

-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2호

3.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찬성의견서 채택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첨부서류

- 의견서 1부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의견서

의안번호	제253호	안건명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
제 출 자	부천시장	의 결 년월일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99. 12. 20)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

동 결정안은 제7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동 설치지역의 인근지역에 위생이 중요시되는 축산물 공판장과 대한항공 정비공장, 중·소업체 및 오정대호가 통과하므로 시민건강관리와 주변교통체증 및 또한 미세먼지 분진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우려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지난 99. 8. 9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시민피해 및 민원발생이 제일 우려되었던 소각로 시설은 위탁처리가 가능하게 되고, 파쇄기만 설치하여도 중간처리업 허가가 가능하게 된 만큼 파쇄기 시설에 대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부지 주변의 담장을 10미터 높이로 설치하여 소음 및 분진을 차단하고 폐기물 보관장소 내 1일 150톤 기준의 스프링롤러 설치, 진출입로에 고압 대형 자동세륜시설의 설치, 1일 5회 이상 사업장 주변 도로 500미터 이내 살수차량 운행, 파쇄시설의 방음막 및 집진시설 설치 등을 철저히 하여 소음, 분진발생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현재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완전히 처리를 하고 허가부서에서 향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여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국토훼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절감과 자원보존에 꼭 필요한 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1999년 12월 20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의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253호
의결년월일	99. 12. 20

발의년월일 : 1999. 12. 20
 발 의 자 : 박노설 의원 외 11명

□ 수정이유

- 오정구 삼정동 37-3번지상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결정안 의견서는 부적정함.

□ 주요골자(수정내용)

- 삼정동 37-3번지 주변 일대에는 레미콘 공장, 아스콘 공장, 소각장, 발전소 등 환경오염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공해배출업체인 건폐물 중간처리업이 들어설 경우 더욱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주변의 많은 중소기업들의 산업활동에도 지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삼정동 37-3번지상의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은 부적정하며, 향후 시 외곽 지역에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수정안 포함]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253호
의결년월일	99. 12. 20 (제75회)

제출년월일 : 1999. 12. 6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폐기물처리시설(중간처리시설)결정조서

구 분	시 설 명	세부시설명	위 치	면적(m ²)	비 고
신 설	폐기물처리시설	중간처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7-3번지	9,660	

□ 결정사유

- 현위치에서 폐기물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아 사업 중이나 현재 단순히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형식에서 탈피, 한걸음 더 나아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폐기물을 원자재 그대로 파쇄기를 이용 처리하여 재활용 자재 및 골재 대응품을 생산, 폐자재를 재활용하고자 하며 일부 발생하는 소각물은 소각전문업체에 위탁처리코자 함.
- 또한 단순 매립처리에서 벗어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여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국토훼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절감과 자원보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참고사항

-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 생산녹지지역, 최고고도지구
- 지적법상 지목 : 공장용지
- 주변현황
 - 인근지역에 축산물공판장이 건립 중이며 주변은 두산식품, 코카콜라 야적장, 대한항공 정비공장
을 비롯 남측으로는 중소규모의 공장이 입지해 있고 북측으로는 하천이 접하고 있음.
- 파쇄기 처리능력 : 150톤/시간(재생처리 : 120톤/시간)
- 토지이용계획

(단위 : m²)

면적	야적장·기타	주차장	녹지	비고
9,660	8,236	160	1,264	

- 그간의 주요추진 사항
 - 99. 2. 6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
 - 99. 3. 8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
 - 99. 4. 15 부천시의회 의건청취(제7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 99. 6. 2~6. 17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99. 6. 23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부결)
 - 99. 7. 16 부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입안사항 취소
 - 99. 10. 29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변경계획서 제출
 - 99. 11.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 변경수리(소각시설 100kg/hr 제외)
 - 99. 11. 9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

위치도(S=1/25,000)

